##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01 발의연월일: 2021. 5. 26.

발 의 자:김민석·한병도·홍정민

강기윤 · 강병원 · 강득구

맹성규 • 이상헌 • 김홍걸

임종성 · 이용빈 · 양정숙

강준현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우유병 바디워시,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의 형태 등을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. 그러나 식품을 본떠 만든 제품은 특히 영유아·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하여 삼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따라서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 임(안 제15조제10호 신설). 법률 제 호

##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식품의 형태·냄새·색깔 및 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식품 모방 화장품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영업의 금지) 누구든지 다	제15조(영업의 금지)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
는 화장품을 판매(수입대행형	
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・수	
여를 포함한다)하거나 판매할	
목적으로 제조・수입・보관 또	
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<u>10</u> . 식품의 형태·냄새·색깔
	및 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
	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
	<u>품</u>